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제 3401호
2017. 3. 29.(수)

함께
서울



목 차

◆ 공 고

제2017-816호 서울메트로·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합병공고	2
---	---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-816호

서울메트로·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합병공고

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자 「상법」 제232조 및 같은 법 제527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3월 29일
서울특별시장

합 병 공 고

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각 이사회 의결과 2017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의 승인으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합병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,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.

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 아래 관계 법인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3월 29일

법인명 : 서울메트로

주 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

대표자 : 김 태 호

법인명 :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주 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

대표자 : 최 용 운



함께 서울

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

- 안전한 서울
-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
- 숨쉬는 서울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